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소상공인 종합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
- 현행 조례에서 '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'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코로나 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'사업장을 둔 소상공인'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(안 제3조)  
(당초)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→ (변경) 사업장을 두고
-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, 전문성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8조, 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 가. 제출배경

- 소상공인은 우리 도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4%, 전체 종사자 수의 31%를 차지하여 도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음식·숙박업, 도·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속해 있어, 이로 인한 **과다경쟁 등으로 휴·폐업 및 도산위기**에 내몰리고 있음
- 또한,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·경제 분야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, 자금지원 단계에서부터 유망업종 창업, 성장지원, 폐업에서 소상공인 직업전환까지 **개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 가능한 전담기관 운영**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

#### [ 사업체 및 종사자 ]

-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충북에는 13만개의 사업체에 74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이중 소상공인은 11만개(84%) 사업체에 23만명(31%)이 종사하고 있음

| 구분      | 충북도     |              | 전국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전체업체    | 소상공인         | 전체업체       | 소상공인           |
| 사업체수(개) | 133,522 | 111,894(84%) | 4,176,549  | 3,464,399(83%) |
| 종사자수(명) | 741,452 | 226,152(31%) | 22,723,272 | 6,993,361(31%) |

#### [ 소상공인 생존율 ]

- 창업 후 1년 60.1%, 3년 38.2%, 5년 29% (중소벤처기업부)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임
  - **현행 조례에서 “충청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(제3조)<sup>3)</sup>**

3) 「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

-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감사원은 조례의 지원대상을 “사업장을 둔” 경우로 한정하길 요청한 바 있음

\* A, B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A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B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두 지자체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

- 안 제8조, 안 제9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
-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(창업-성장-재기 및 직업전환)로 컨설팅 및 자금, 직업전환 교육 등 맞춤형 원스톱 종합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
- 타 시·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

| 구분        | 명 칭               | 대행기관       | 운영인력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서울        | 자영업지원센터           | 서울신용보증재단   | 42   |
| 부산        | 소상공인희망센터          | 부산신용보증재단   | 6    |
| 대구        | 소기업 &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| 대구신용보증재단   | 9    |
| 인천        | 소상공인디딤돌센터         | 인천신용보증재단   | 6    |
| 광주        | 소상공인지원부           |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| 5    |
| 대전        | 소상공인지원센터          |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| 6    |
| 울산        |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      | 울산신용보증재단   | 6    |
| 경기        | (재)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  |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| 80   |
| 강원        | 전통시장지원센터          | 강원도경제진흥원   | 6    |
| <b>충북</b> | <b>미운영</b>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충남        |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      | 충남경제진흥원    | 5    |
| 전북        |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        |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| 12   |
| 전남        |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       | 전남신용보증재단   | 4    |
| <b>경북</b> | <b>미운영</b>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경남        | 소상공인지원팀           | 경남경제진흥원    | 9    |
| 제주        |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      |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| 8    |
| <b>세종</b> | <b>미운영</b>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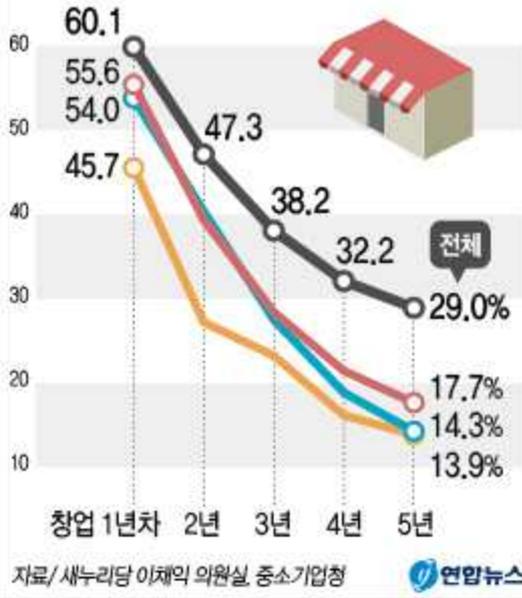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지원 대상 범위를 “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- 소상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기업환경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이러한 측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권 분석이나 사업계획 검토, 세무, 회계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
- 다만, 소관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기관 선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 강화로 예산 낭비 없는 업무 효율화 추진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 소상공인 연차별 생존율

생존율 하위 3개 업종

— 숙박·음식점업    — 예술·스포츠·여가업  
— 금융·보험업



장예진 기자 / 20160928

트위터 @yonhap\_graphics, 페이스북 tuneey.kr/LetN1